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160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17. 10. 16.
4. 회부일자 : 2017. 10. 24.

II . 제안이유

- 적정규모학교 설립 및 혁신적인 교육공간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부로 부터 한시적으로 지방서기관 정원책정이 승인되어, 「지방교육행정기 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한시정원과 직급 별 정원을 정하고자 함.

### Ⅲ. 주요내용

1. 한시기구인 교육공간기획 전담부서의 장인 지방서기관 1명을 정원의 총 수 및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증원 책정함(안 제2조 및 별표 3).
2.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한시기구의 존속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정함(안 부칙).

### 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2. 예산조치 :
  -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[조례안 별첨2 참고]
3. 기 타 :
  - 신·구조문 대비표 : [조례안 별첨1 참고]
  - 입법예고(2017. 9. 16. ~ 10. 5.) 결과 : 의견 없음
  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 -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.

## 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17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160호로 제출되어 2017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제2159호)와 관련하여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전담부서 장의 정원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 제2조와 [별표3]은 교육부의 ‘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승인 검토결과 통보’(지방교육자치과-3852,2017.8.23)에 따른 한시기구의 부서장(4급) 정원이 증원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.

(총원: 7,112→7,113, 일반직 정원: 6,649→6,650, 4급: 38→39)

동 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제2159호)와 연동하여 함께 개정되는 사항인바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의2 및 제18조에 따라 조례 개정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<sup>1)</sup>

1)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15조의2(정원 책정의 승인) ① 교육감은 일반직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(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(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(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본청의 과장·담당관 이상

□ **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

---

2. 교육지원청의 국장 이상

3. 직속기관의 부서장(일반직 4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) 이상 제18조(한시정원)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.

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(相計)하여 조정할 수 없다.

④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.

# 관계 법령

##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제33조(공무원의 배치) ①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·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」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##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7.6.14.] [대통령령 제28013호, 2017.5.8., 일부개정]

제15조의2(정원 책정의 승인) ① 교육감은 일반직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(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(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(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본청의 과장·담당관 이상
2. 교육지원청의 국장 이상
3. 직속기관의 부서장(일반직 4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) 이상

제18조(한시정원)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.

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(相計)하여 조정할 수 없다.

④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.